

#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 (김종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658
----------	------

발의연월일 : 2017. 8. 23.

발의자 : 김종희 · 윤영일 · 박준영

김중로 · 황주홍 · 정동영

주승용 · 조배숙 · 정운천

김관영 · 김수민 · 이동섭

유성엽 의원(13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특징적으로 발달한 갯벌은 열대우림에 비견되는 높은 생산성과 독특한 생태적 특성, 수산자원의 중요 생산지로서의 가치와 이를 기반으로 한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의 근간이 되는 자연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국토임.

일찍이 정부는 습지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람사르협약)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1999년 「습지보전법」을 제정,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나누어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나,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소규모 내륙습지와 달리 갯벌은 연안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어민이 빈번히 출입하는 어장으로 이용되는 등 관리여건이 내륙과 크게 달라 「습지보전법」의 관리방식인 출입제한과 건축제한으로는 실효성이 있는 관리가 어려움.

어민에게 갯벌은 육지의 밭과 같은 생산지로 인식되지만, 사적소유

권이 형성되지 않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과 갯벌의 생산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취활동 등에 취약한 공간으로 육상에서는 찾기 힘든,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관리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갯벌에 흘러든 오염물질의 증가, 침입외래생물의 번성, 과도한 수산물 채취 등으로 갯벌생태계가 악화되면서 갯벌에서 생산되는 낙지와 꼬막 등 수산물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갯벌에 의존하는 어촌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붕괴될 조짐마저 나타나는 상황으로 갯벌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시급함.

한편, 과거 갯벌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농지나 염전으로 활용하던 곳에서는 농산물 수입확대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간척지를 갯벌로 되돌려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생태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갯벌 복원에 필요한 토지의 매입이나 보상, 공유수면 전환에 필요한 행정조치 등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생산성이 높은 갯벌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과거 훼손된 갯벌의 복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며, 수산물의 중요생산지인 갯벌을 청정하게 유지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최근 생태교육과 관광의 장(場)으로서 가치가 높은 갯벌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갯벌에 대한 종합적 · 입체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갯벌의 적용 범위를 바닷가,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및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으로 함(안 제3조).
- 다. 갯벌의 관리와 이용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갯벌생태계 및 갯벌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훼손된 갯벌에 대한 복원·복구 등의 책무를 지며,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를 가짐을 명확히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제2장에서는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갯벌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갯벌과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한 갯벌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갯벌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갯벌 오염물질유입방지, 폐기물의 수거·처리, 유해해양생물의 조사·제거 및 갯벌생물자원을 조성토록 하는 등 갯벌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갯벌의 오염원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바.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갯벌을 갯벌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갯벌생태공원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갯벌생태공원에 대한 환경개선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 까지).

사. 갯벌생태계의 건강성과 갯벌 생물자원의 안전한 생산을 위하여 관리구역 중 갯벌생산구역에 대하여 청정갯벌을 지정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갯벌생태공원 및 관리구역에서 행위제한과 출입제한을 설정하고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중지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자. 제4장에서는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구분, 복원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인·허가 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사후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차. 제5장에서는 갯벌생태관광 진흥,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및 양성기관 지정,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갯벌생태해설사 활용 및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 까지).

카. 제6장 보칙에서는 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협력,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손실보상, 토지 등의 협의매수, 국고보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

타. 제7장 별칙에서는 별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갯벌”이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펄, 모래, 자갈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
2. “갯벌생태공원”이란 갯벌환경 및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갯벌에 대한 인식증진·생태관광 등을 통해 국민의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청정갯벌”이란 갯벌생태계의 건강성과 갯벌에서 안전한 수산자원의 생산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갯벌을 말한다.

4. “갯벌복원”이란 갯벌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하여 간척·매립이나 인공구조물,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갯벌의 상태로 회복·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6.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제3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닷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 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2. 간석지[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기준으로 한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갯벌 관리 및 이용의 원칙) 갯벌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국민의 해양자산으로서 갯벌이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도록 할 것
2. 갯벌의 이용은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생태적으로 중요한 갯벌생물은 보호하고, 갯벌의 생물다양성은 보전할 것
4. 국민이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에 참여하고 갯벌생태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갯벌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갯벌생태계와 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할 것
6. 갯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이 증진되도록 할 것

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갯벌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갯벌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갯벌생태계 및 갯벌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  
할 것

2. 갯벌이용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갯벌생태계 훼손에 대하여 스스  
로 복원·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갯벌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③ 모든 국민은 갯벌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④ 갯벌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갯벌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갯벌에 대한 인식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  
게 갯벌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갯벌과 관련된 지식 및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 생태학습, 생물채취 등 갯벌  
보전·이용 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  
다.

## 제2장 갯벌관리 · 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갯벌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갯벌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갯벌생태계의 현황
2. 갯벌 어업, 어장 등 갯벌 이용 현황
3.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
4. 갯벌생물의 서식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갯벌생태공원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갯벌어업 등의 활성화 방안
7. 갯벌복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8. 갯벌복원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9.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0.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11.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12. 그 밖에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갯벌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갯벌의 면적, 갯벌어업 및 어장 등 이용현황, 오염원, 갯벌복원 대상지 등 갯벌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공원의 지정, 갯벌복원 대상지역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갯벌실태조사 결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에 전산화하여야 한다.

제10조(갯벌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갯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갯벌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처리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3. 갯벌 생물자원 조성 및 관리
4. 갯벌에 방치된 어구 등 시설물의 실태조사 및 철거
5. 그 밖에 갯벌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갯벌 오염물질 유입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오염원 및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유해해양생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갯벌 생물다양성 보전조치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갯벌생태공원의 지정 및 관리

제11조(갯벌생태공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갯벌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관리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갯벌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2. 갯벌에서의 수산업이 활발하여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공원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 주요 갯벌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 어업권·광업권 등 이용현황
5.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갯벌생태공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을 요청하려는 갯벌생태공원이 둘 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생태공원을 해제할 수 있다.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갯벌생태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자연적인 환경변화 등으로 갯벌공원구역의 지정목적을 충족하여

## 관리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공원을 지정·변경·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변경·해제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갯벌생태공원 관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갯벌생태공원에 대하여 5년마다 갯벌생태공원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관리계획의 변경은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대상 갯벌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갯벌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3.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갯벌 생물다양성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갯벌생태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갯벌관리구역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공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갯벌안전구역: 갯벌 이용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역
  2. 갯벌휴식구역: 갯벌생태계의 보호·회복 등을 위한 구역
  3. 갯벌생산구역: 수산종자의 방류, 산란장 조성 등 갯벌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역
  4. 갯벌체험구역: 갯벌 교육·탐방·체험 등을 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구역을 해당 구역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주변 해역의 이용·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해제할 수 있다.

③ 관리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갯벌생태공원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갯벌 생물다양성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2. 갯벌안전구역 내 출입안내에 관한 표지 및 표주 사업, 인명 구조에 필요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 등
3. 갯벌휴식구역 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을 통한 어민 소득 지원 사업 등
4. 갯벌생산구역 내 수산물 양식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지원시설의 설치 사업 등
5. 갯벌체험구역의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과 데크 등 체험시설 설치 사업 등

② 갯벌생태공원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의 종류·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청정갯벌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갯벌생산구역 중 청정갯벌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계

의 건강성과 갯벌 생물자원의 안전한 생산을 위하여 청정갯벌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한 기준, 조사,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생물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수산업 관련 단체의 장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갯벌 생물자원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 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갯벌생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갯벌생태공원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2. 갯벌생태공원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갯벌생태공원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갯벌생태공원 인접지역 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갯벌조사 및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갯벌생태공원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

5. 「어촌·어항법」 제2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 사업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갯벌생태공원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생태공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9조(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공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벌생태계의 회복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제1호의 갯벌안전 구역과 같은 항 제2호의 갯벌휴식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응급 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제거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② 지역주민은 일상생업을 하기 위하여 갯벌안전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제20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공원에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장 갯벌복원사업

제21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해양보호구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습지보호지역
3.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갯벌생태공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둘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한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해양보호구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습지보호지역
  3.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한

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갯벌복원계획의 수립·변경 등) ①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갯벌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갯벌복원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갯벌복원의 목표와 범위에 관한 사항
2. 복원 대상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환경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복원사업의 방법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훼손된 갯벌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증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갯벌복원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3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등) ① 제22조에 따라 갯벌복원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받은 시행자는 갯벌복원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자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  
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산지관리법」 제14조 ·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  
가 ·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1항 ·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 신고 및 「산림보호  
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  
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신고 또는 협의
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8.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의 인가 또는 신고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  
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등의 허가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②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시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갯벌복원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제26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① 시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실시 한 지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갯벌복원사업이나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한 갯벌복원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한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한다.

## 제5장 갯벌생태관광 등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진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갯벌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전한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하여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표시 활용 방법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⑤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은 생태관광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갯벌생태관광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 제28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갯벌생태공원 인접 지역
  2. 제21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이 시행된 인접 지역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보호구역 인접 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습지보호지역 인접 지역
  5.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협약」에 따라 습지도시로 인정된 지역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생태마을이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갯벌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④ 갯벌생태마을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갯벌생태해설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갯벌생태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을 체험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1. 갯벌생태계의 해설

2. 갯벌의 홍보·교육

3. 생태탐방안내

4. 그 밖에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에 필요한 업무

③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 의 통보 등 갯벌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행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

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③ 양성기관의 지정, 운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33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 보전·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갯벌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
2. 갯벌의 지속적 생산력 증진을 위한 외래해양생물의 구제(驅除)에

## 관한 사업

3. 갯벌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업
  4.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사업
  5. 그 밖에 갯벌 보전·이용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에 따라 연구·개발된 기술 및 성과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갯벌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갯벌 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갯벌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 등에 설치된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갯벌실태조사
2. 제11조에 따른 갯벌생태공원의 지정·변경
3. 제14조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의 지정·변경·해제

4. 제16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인증
  5.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계획의 수립·변경
  6. 제23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 ②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방해할 수 없다.
- 제36조(손실보상)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어업행위에 관한 경우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제81조를 따른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의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7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갯벌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갯벌

과 주변지역에 있는 어업권,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제38조(국고보조) 국가는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갯벌에 대한 인식증진 사업
2. 제10조에 따른 갯벌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 제15조에 따른 갯벌생태공원의 관리
4.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5. 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진흥 사업

## 6.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운영 지원 및 양성기관

### 운영 사업

## 7. 제34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7장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공원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갯벌생태관광 인증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한 자
2.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에 따른 갯벌안전구역 또는 갯벌휴식구역의 출입제한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조사·관찰 행위 및 장애물 등의 변경·제거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